

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미충족에 따른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

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제1항제2호및제4호, 같은조 제3항 및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「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미충족에 따른 시정명령」 문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고 연락도 되지 않아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9. 9.

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장



1. 건 명: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미충족에 따른 시정명령
2. 근 거: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제1항제2호및제4호, 같은조 제3항,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: 불임(공시송달 명단)
4. 공고기간: 2026. 9. 9. ~ 2026. 9. 23.(15일간)
※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.
5.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 지역협력과 최은선(Tel. 02-2639-231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【붙임】

공시송달 명단

관서: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

연번	기업명 (지정번호)	대표자명 (소재지)	문서의 명칭 (예정된 처분의 제목)	문서의 주요 내용				송달 불능 사유
				위반내용	처분의 내용	시정명령 내용	시정기한	
1	자리주식회사 (ZariCorp) (제2016-0**호)	신** 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***길 **, *층)	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미충족에 따른 시정명령	유급근로자 고용 요건 미충족	시정명령	유급근로자 고용 및 결과 제출	2026. 10. 8.	폐문 부재
				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요건 미충족	시정명령	•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유지 • 반기별 1회 이상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회의 개최 - 근로자대표, 사외이사 등기 후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회의 추가 개최하여 증빙 제출		

2026. 9. 9.

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

